

| 구분  |  | 동별      | 통 수 | 반 수   | 비 고 |
|-----|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구별  |  |         |     |       |     |
| 남 구 |  | 역 곡 3 동 | 36  | 261   |     |
|     |  | 괴 안 동   | 35  | 288   |     |
|     |  | 중 동     | 29  | 208   |     |
|     |  | 송 내 1 동 | 23  | 172   |     |
|     |  | 송 내 2 동 | 24  | 189   |     |
|     |  | 상 동     | 23  | 125   |     |
| 소 계 |  |         | 451 | 2,530 |     |
| 중 구 |  | 심 곡 2 동 | 23  | 142   |     |
|     |  | 소 사 3 동 | 17  | 110   |     |
|     |  | 심 곡 진 동 | 20  | 114   |     |
|     |  | 원 미 1 동 | 23  | 144   |     |
|     |  | 원 미 2 동 | 22  | 143   |     |
|     |  | 춘 의 동   | 35  | 177   |     |
|     |  | 성 곡 동   | 49  | 246   |     |
|     |  | 원 중 1 동 | 34  | 191   |     |
|     |  | 원 중 2 동 | 27  | 158   |     |
|     |  | 고 강 본 동 | 33  | 194   |     |
|     |  | 고 강 1 동 | 22  | 130   |     |
|     |  | 오 정 동   | 32  | 166   |     |
|     |  | 도 당 동   | 40  | 225   |     |
|     |  | 신 흥 1 동 | 35  | 195   |     |
|     |  | 신 흥 2 동 | 39  | 195   |     |

##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 : 107

제안년월일 : 1992. 8.

제안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내부부 세제22670-206('92. 7. 8)호 및 경기세정 22670-1220('92. 7. 13)호에 의거 조례 준칙 시달
-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근거법규 : 지방세법 제7조
- 면제대상 : 종교단체(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)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.
- 면제세목 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

##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종교단체(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. 이하 같다)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면제대상)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제 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 : 107

제안년월일 : 1992. 8.

제안자 : 부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92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 계획(내무부 국지 27074-12482)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(내무부 국지 27074-188)에 의거하여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하므로써,
- 독서를 통한 올바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사회 기풍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(§2)
  - ➔ 시장이 새마을 문고 부천시지부 회장에게 위탁 운영·관리
- 이동도서관의 사업(§3)
  - ➔ 주민에게 무상으로 도서 대여 및 독서진

### 홍운동 전개

-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§4)
  - ➔ 6내지 10명으로 구성
    -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(새마을과장 : 당연직)
    - 새마을문고 지도자 (2명이상)
    - 기타 독서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(3명이상)
-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(§5)
  - ➔ 시장이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 회장에게 보조
- 이동도서관 직원임용 (§6)
  - ➔
    - 임용절차 : 부천시지부 회장이 시장과 협의후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음.
    - 인건비 지급기준 :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 준용